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동국대학교 홀프로브 측정시스템 구매

나. 예산액 : 250,000,000원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 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본 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의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건으로, 과제기간 내 장비의 도입·설치·검수 및 연구개발 착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 (공동활용 시간, 공동활용 수익금)를 달성하여야 함. 입찰 및 납품 일정이 지연될 경우 연구수행 일정과 정부지원 연구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사업과 연계된 일정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을 실시하고자 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